『부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』 연혁

기준시점	지 역	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	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
1990.02.19 ~ 1995.02.28	부산직할시	2,000만원 이하	700만원
1995.03.01 ~ 1995.10.18	부산광역시	2,000만원 이하	700만원
	기장군	1,500만원 이하	500만원
1995.10.19 ~ 2001.09.14	부산광역시	3,000만원 이하	1,200만원
	기장군	2,000만원 이하	800만원
2001.09.15 ~ 2008.08.20	부산광역시	3,500만원 이하	1,400만원
	기장군	3,000만원 이하	1,200만원
2008.08.21 ~ 2010.07.25	부산광역시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	기장군	4,000만원 이하	1,400만원
2010.07.26 ~ 2013.12.31	부산광역시	5,500만원 이하	1,900만원
	기장군	4,000만원 이하	1,400만원
2014.01.01 ~ 2016.03.30	부산광역시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기장군	4,500만원 이하	1,500만원
2016.03.31 ~ 2018.09.17	부산광역시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기장군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2018.09.18 ~ 2021.05.10	부산광역시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기장군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2021.05.11 ~ 2023.02.20	부산광역시	7,000만원 이하	2,300만원
	기장군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2023.02.21 ~ 현재	부산광역시	8,500만원 이하	2,800만원
	기장군	7,500만원 이하	2,500만원

출처: 부동산케이스노트 https://realscasenote.com/